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31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7.
발의자 : 이훈기 · 박정 · 박지원
김주영 · 허종식 · 박찬대
이재관 · 이재강 · 임미애
박용갑 · 정일영 · 최혁진
이병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,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적정한 학급 규모의 기준이 달라 학급 규모에 있어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음.

그런데 학급당 적정한 학생 수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에 해당하므로 적정 학급 규모의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 ·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· 고시하고,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쾌적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

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의2 신설).

초 ·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 · 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계획 수립 등) ① 교육부장관

은 교육통계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
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
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에 관한 계획을
수립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
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,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·
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급당 적정 학생 수 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의2의 개

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24조의2(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계획 수립 등)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,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